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편법 제2조 제6항(위탁 집배업무 종사의 제한) 및 제7항(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신설('22.6월)에 따라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 집배업무 종사가 제한되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결격사유(제한기간)을 규정하며,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제한기간) 신설 (안 제4조 제5항)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의 기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년부터 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정하는 등 기간을 구체화

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요청의 권한 위임 신설 (안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2)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제9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u> <u>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u> <u>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u> <u>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u> <u>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u> <u>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u>

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u><신설></u> 2. ~ 27. (생략) ② (생략)	<u>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u> <u>6년</u>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u>2년</u>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u>20년</u>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u>20년</u>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2. ~ 2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8222